




팀 원	팀 장	본부장	대표이사
송태영			

# 사조동아원 사회적책임경영

## 목 차

1. 인원현황
2. 경영정책
  - (1) 임직원교육
  - (2) 안전보건경영
  - (3) 인권경영
  - (4) 윤리경영
  - (5) 소비자권익보호
  - (6) 사회공헌
  - (7)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3. 불임문서

# 1. 인원현황

## 1-1. 인원현황 상세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총 인원수	342	87%	50	13%	392	100%	380	86%	64	14%	444	100%	407	85%	70	15%	477	100%	
고용형태별 인력현황	정규직	285	89%	35	11%	320	82%	300	88%	40	12%	340	77%	320	89%	39	11%	359	75%
	무기계약직		0%		0%	0	0%		0%		0%	0	0%		0%		0%	0	0%
	기간제 근로자	8	73%	3	27%	11	3%	7	78%	2	22%	9	2%	9	75%	3	25%	12	3%
	한시적 근로자		0%		0%	0	0%		0%		0%	0	0%		0%		0%	0	0%
	일일 근로자		0%		0%	0	0%		0%		0%	0	0%		0%		0%	0	0%
	단시간 근로자		0%		0%	0	0%		0%		0%	0	0%		0%		0%	0	0%
	파견 근로자		0%		0%	0	0%		0%		0%	0	0%		0%		0%	0	0%
	용역직	49	80%	12	20%	61	16%	73	77%	22	23%	95	21%	78	74%	28	26%	106	2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0%		0%	0	0%		0%		0%	0	0%		0%		0%	0	0%	
직급별 인력현황	임원	8	100%		0%	8	2%	11	100%	0	0%	11	3%	11	100%		0%	11	3%
	관리자 (과장, 생산관리자 이상)	66	99%	1	1%	67	20%	66	99%	1	1%	67	19%	64	98%	1	2%	65	18%
	비관리자 (대리 이하)	219	86%	37	14%	256	77%	230	85%	41	15%	271	78%	254	86%	41	14%	295	80%
연령별 인력현황	만 30세 미만	28	60%	19	40%	47	14%	35	63%	21	38%	56	16%	45	71%	18	29%	63	17%
	만 30세 이상 ~만 50세 미만	188	91%	18	9%	206	62%	189	90%	20	10%	209	60%	193	89%	24	11%	217	58%
	만 50세 이상	77	99%	1	1%	78	24%	83	99%	1	1%	84	24%	91	100%		0%	91	25%
국적별 인력현황	대한민국	293	89%	38	11%	331	100%	307	88%	42	12%	349	100%	329	89%	42	11%	371	100%
	그 외		0%		0%	0	0%		0%		0%	0	0%		0%		0%	0	0%
자발적이직	20	95%	1	5%	21	6%	33	83%	7	18%	40	11%	26	87%	4	13%	30	8%	

\* 직급별·연령별·국적별 인력현황, 자발적이직률은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산정

\* 자발적이직률 : 자발적 이직자수 / 전기말 재직자

## 1-2. 근로자 다양성 제고 계획

사조동아원은 임직원의 가치관, 환경 및 배경에 대하여 존중하며, 근로자의 다양성을 위하여 조직문화를 위해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별, 세대, 학벌, 지역, 장애유무 등에 따른 차별을 원천 금지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 만 60세 초과 근무자 확대

사조동아원은 정년퇴직(만 60세연말) 이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60세 이상 '시니어 근무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경력자가 계속 근로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Win-Win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걸맞게 근로자의 신체적인 컨디션과 근로의지를 판단하여 '시니어 근무자'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E)	2025년(E)	2026년(E)	비고
시니어근로자	6	7	6	6	6	6	축탁계약

###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조동아원은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인 운동선수를 직접고용하고 체육활동을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근로자의 장애유형에 따라 적재적소 인원을 배치하여 능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조동아원은 장애인근로자 채용 법정무응을 준수하여 ESG경영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E)	2025년(E)	2026년(E)	비고
의무고용률	3.1%	3.1%	3.1%	3.1%	3.1%	3.1%	* 매년말 기준
장애인고용률	1.3%	1.2%	3.1%	3.1%	3.1%	3.1%	
달성여부	미달	미달	달성	달성	달성	달성	

## 2. 경영정책

### 2-1. 임직원교육

사조동아원은 법정 의무교육 외 임직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직무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23년 교육실시내역

교육대상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시간(h)
사외이사	내부회계 관리제도 이해 및 운용	23년 08월	39
내부회계TF	내부회계 관리제도, 신뢰받는 기업	23년 12월	300
	내부회계 관리 전문 연수 교육	23년 07월	63
팀장교육	비즈니스 코칭 교육	23년 05월	32
	비즈니스 코칭 교육	23년 11월	32
공시담당자	주식전문연수 교육	23년 05월	34
회계담당	법인세 결산 교육	23년 12월	24
식품연구원	식품관련 법규 교육	23년 06월	8
	FSSC 22000 내부심사원 교육	23년 08월	32
	FSSC 22000 내부심사원 교육	23년 10월	32
	할랄 실무자 교육	23년 10월	8
	IHC(할랄위원) 역량 교육	23년 12월	16
HACCP팀원	HACCP 팀장 교육	23년 02월	4
	HACCP 팀장 교육	23년 03월	8
	HACCP 실무 교육	23년 05월	18
	HACCP 실무 교육	23년 04월	24
관리직	윤리경영 교육 "행복의 공식"	23년 11월	1328
	직무역량교육	23년 12월	670
	직무역량(소통, 생산성향상 등)	23년 11월	960
	직무역량교육	23년 09월	1550
	신입사원 입문 교육	23년 11월	7
자격증	제빵기능사_역량강화	23년 03월	60
	설비보전기사 교육	23년 07월	40
인사담당자	연말정산교육	23년 12월	20
교육담당자	효율적 교육체계 수립	23년 12월	8

\* 교육시간 = 교육인원 x 교육시간

## 2-2. 안전보건경영

사조동아원의 전 임직원과 구성원은 안전보건을 경영의사 결정 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각자의 활동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선과 예방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하며 무재해 사업장을 추구한다.

제1조. 안전보건 관련 국가협약, 국내법규를 파악하고 안전보건 법규 준수 및 목표 수립을 통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제2조. 임직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제3조. 각 생산, 설비, 공정 및 설계단계는 안전보건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사업 활동의 전 영역에서 최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4조. 안전보건 경영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임직원의 협의와 참여가 가능한 환경여건을 제공한다.

제5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역사회 안전보건 개선 활동에 적극참여한다.

\* 불임 안전보건경영방침 참조

### 안전보건경영 중장기 목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	
목표 전략	안전보건시스템 정착		안전보건관리 고도화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	
세부 시행 활동	전담조직 업무 체계 확립 -. 전담조직 및 사업장별 R&R -. 관리감독자 육성 및 역량 강화 -. 중장기 안전보건 목표 수립		ISO 45001 인증 획득 -. 대상사업장 부산, 당진(제분), 당진(사료), 함평 -.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안전자율진단 -. 법정관리자 통합 현장점검 실시 -. 전 직원 동참 자율 안전 관리 예) 관리감독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임직원 참여 및 소통 강화 -. 안전보건 게시판 운영 -. 안전제안제도 운영 -. 현장직 위험성평가 참여		아차사고 개선 활동 -. 아차사고 발굴 개선 캠페인 -. 우수참가자 포상 강화 -. 사고 발생지점 인식표 부착		협력사 안전보건관리 -. 협력사 안전보건교육 지원 -. 협력사 안전보건관리 평가 실시 → 협력사 안전관리 취약점 개선	
세부목표	안전보건 의식 고취 -. 계절별 안전관리 테마 선정					
	산업재해	목표 : 0회      실적 : 2회	목표 : 0회      실적 :	목표 : 0회      실적 :	목표 : 0회      실적 :	
	안전점검	목표 : 12회      실적 : 18회	목표 : 12회      실적 :	목표 : 12회      실적 :	목표 : 12회      실적 :	
안전제안	목표 : 60회      실적 : 5회	목표 : 60회      실적 :	목표 : 60회      실적 :	목표 : 60회      실적 :		

안전보건위험 관리활동

구 분	담 당	활동명	주 기	활동내용	
위험성평가	각 사업장	정기 위험성평가	연 1회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수시 위험성평가	사유발생시	신규공정, 산재발생공정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작업환경측정	각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반기 1회	작업장내 유해인자 측정 및 개선(소음, 분진 등)	
보건 관리	각 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	월 1회	보건간호사, 산업보건의 근로자 건강 상태 관리	
		건강검진	일반	연 1회	근로자 건강 관리
			특수	법정 주기	근로자 건강 관리(유해인자별)
안전보건교육	각 사업장	법정	정기	분기 1회	주기적 교육을 통한 사고 예방
			채용시	채용 직후	사업장 내 위험요소 및 안전작업수칙 교육
			특별교육	채용 직후	지게차, 로봇 등 점검 및 작업수칙 교육
		직무	관리감독자	선임시	안전보건업무 전문성 확보 및 사고 예방
산안위	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분기 1회	안전관련 근로자 의견 청취 및 개선	
안전제안	각 사업장	안전제안	분기 1회	제안활동을 통한 작업장 환경 개선	
안전점검 (본사주도)	안전 관리팀	본사주도 사업장 안전점검	반기 1회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상태 점검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 이행 상태 점검	
				안전보건담당자 업무 수행 평가	

산업재해 지표 공개

1) 사업장별

단위 : %

구 분	사업장명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제분	본사	0.00	0.00	0.00	
	당진공장	0.00	0.00	0.00	
	부산공장	2.30	1.16	0.00	
곡물	논산공장	0.00	0.00	0.00	
	광석공장	0.00	0.00	0.00	
생물자원	당진공장	0.00	0.00	1.89	
	함평공장	0.00	0.00	5.56	

\*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21년 1월 ~ 2023년 12월)

\* 산업재해 지표 : 재해자수(사고재해자 + 질병재해자)/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x 100

2) 협력업체별

단위 : %

구 분	협력사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제분	비케이로지스	0.00	0.00	0.00	부산공장
	동아로지스틱스	14.29	0.00	0.00	
	용진하이테크	0.00	0.00	4.55	
	포유푸드	0.00	0.05	0.00	당진공장
	더원로지스틱스	0.00	0.00	0.00	
	용진하이테크	0.00	0.00	11.1	
생물자원	연안개발	7.69	0.00	0.00	함평공장

\*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21년 1월 ~ 2023년 12월)

## 2-3. 인권경영

사조동아원은 지속가능한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모든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권정책을 제정한다. 본 인권정책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거래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 및 협력사에게 권장하여야 한다. 단, 법규와 상충 시 현지 국가의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의 법규를 반영하여 인권정책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조. 인권존중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한다.

### 제2조. 차별금지

성별 · 인종 · 국적 · 종교 · 장애 등을 이유로 채용 및 승진, 교육 등과 관련하여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 제3조. 인도적 대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임직원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구서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불합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4조. 근로시간

근로 및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사규 및 법규에 따른다.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하며 임직원의 역량 개발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 제5조. 아동노동 금지

법률에 따라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용인될 수 없다.

### 제6조.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가 보장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결성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제7조. 지역주민에 대한 인권보호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 안전보건, 거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지역주민의 안전 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 자유를 보호한다.

### 제8조. 산업안전에 대한 보장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임직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한다. 위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와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 인권경영 중장기 목표

### 인권경영 위반 제보 채널 확대 (2023년 이내)

사조동아원은 임직원 및 협력사 등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제보할 수 있는 '사조그룹 온라인제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기존 온라인 제보시스템과는 별도로 내부 인원이 인권침해사실을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라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 노조위원회를 통한 사업장별 고충접수

### 인권영향평가 시행 (2025년 이내)

사조동아원이 추구하는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권 정책의 개정, 업무 개선, 임직원 교육 등 인권 존중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행 후 평가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 2-4. 윤리경영

### 부패방지정책

#### 제1조. 부패행위 및 뇌물수수금지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어떠한 금품, 향응 그리고 뇌물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 제2조. 법규 및 규정준수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부패 및 뇌물수수 금지와 관련 사내규정 및 국내외 법령을 준수한다.

#### 제3조. 부패방지정책 미준수시 조치

회사는 임직원이 발생시킨 부패행위에 대하여 사내규정 및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4조. 부패방지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의지

회사는 부패방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시킨다.

#### 제5조. 부패행위 및 뇌물수수 제보자의 신분보호

회사는 제보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선의의 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하여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 활동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회사는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과 제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제보로 인해 회사에 기여된 사항은 업무평가에 반영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 제6조. 부패방지 책임자의 권한과 의무

부패방지 책임자는 부패방지과 관련된 업무의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받으며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개선 프로세스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

#### 제7조. 부정방지에 대한 실행

윤리실행에 관한 서약 및 거래약정서 사전공개

\* 불임 윤리경영실행 서약서, 협력사 행동규범 준수 서약서 참조

## 2-5. 소비자권익보호

### 소비자권익보호 정책

사조동아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권익 보호 정책을 제정한다. 전 임직원은 소비자의 신뢰와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소비자와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 제1조. 제품 안전성 보장

제품 개발 및 생산 과정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 제2조. 제품 정보의 투명성

제품 정보(성분, 원산지, 소비기한 등)를 명확하게 제공하여 소비자가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제3조. 소비자 불만 대응

소비자의 불만 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대응한다. 인원을 배치하여 소비자의 문의와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 제4조. 제품 정보 제공

소비자에게 제품의 사용 방법, 위험 요소에 대한 경고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여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사용을 돕는다.

#### 제5조.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제6조. 소비자 참여와 의견 수렴

소비자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고 분석하여 제품 개선에 반영한다.

#### 제7조. 법률과 규정 준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소비자 불편사항 처리절차

<p><b>1. VOC 접수</b></p> <p>고객상담실 상담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고객센터</p>	<p><b>2. 대응</b></p> <p>처리방안 도출 클레임 공유 유관부서 협조</p>	<p><b>3. 제품회수</b></p> <p>현장 방문 택배 퀵서비스</p>
<p><b>4. 원인분석</b></p> <p>공장 품질관리팀 식품종합연구소</p>	<p><b>5. 대책수립</b></p> <p>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재발방지 교육</p>	<p><b>6. 소비자 피드백</b></p> <p>분석결과 피드백 보상 협의 클레임 DB 관리</p>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분쟁유형	해결기준
1.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위 2. 부패 변질 3. 유통기한 경과 4. 이물혼입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5. 부작용 6. 용기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2-6. 사회공헌

### 사회공헌 정책

사조동아원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사회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한다. 장애인, 노인, 어린이, 저소득층 등 필요한 서비스나 자원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지원하고 지역의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을 후원하면서 소재지 지역의 발전에 공헌한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추구하며, 탄소배출 감소, 재활용, 자원 절약, 생물 다양성 보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친환경적 사회공헌을 노력한다.

### 중장기 목표

사조동아원은 현재 본사 사업장 기준으로 지역관청 및 푸드뱅크 등과 연계하여 후원물품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토대로 2030년까지 전국의 각 사업장별로 지역별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사회공헌활동의 범위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 사회공헌활동

일 자	상생처	상생활동
2023년 1월	부산동구청_사랑의열매	관내 불우이웃돕기 성품 기탁
2023년 1월	부산시_아동복지연합회	부산 지역 아동복지시설 돕기 성품 기탁
2023년 1월	부산공장 인근주민	인근 불우이웃돕기 성품 기탁
2023년 9월	부산동구청_사랑의열매	관내 불우이웃돕기 성품 기탁
2023년 9월	부산시_아동복지연합회	부산 지역 아동복지시설 돕기 성품 기탁
2023년 9월	부산공장 인근주민	인근 불우이웃돕기 성품 기탁

일 자	상생처	기부품목	수량(대)	시중판매가	금액	비고
2023년 1월	부산동구청_사랑의열매	맥선찰고운(3*6)	100	16,800	1,680,000	
2023년 1월	부산시_아동복지연합회	맥선찰고운(3*6)	100	16,800	1,680,000	
2023년 1월	부산공장 인근주민	맥선찰고운(3*6)	160	16,800	2,688,000	
2023년 9월	부산동구청_사랑의열매	맥선찰고운(3*6)	100	16,800	1,680,000	
2023년 9월	부산시_아동복지연합회	맥선찰고운(3*6)	100	16,800	1,680,000	
2023년 9월	부산공장 인근주민	맥선찰고운(3*6)	160	16,800	2,688,000	

## 2-7.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정책

사조동아원은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공급망 정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한 활동을 지속한다. 또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협력사 행동규범을 수립하여 함께 노력한다.

#### 제1조. 친환경 구매

기후변화 대응 및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친환경 원료 구매를 위시한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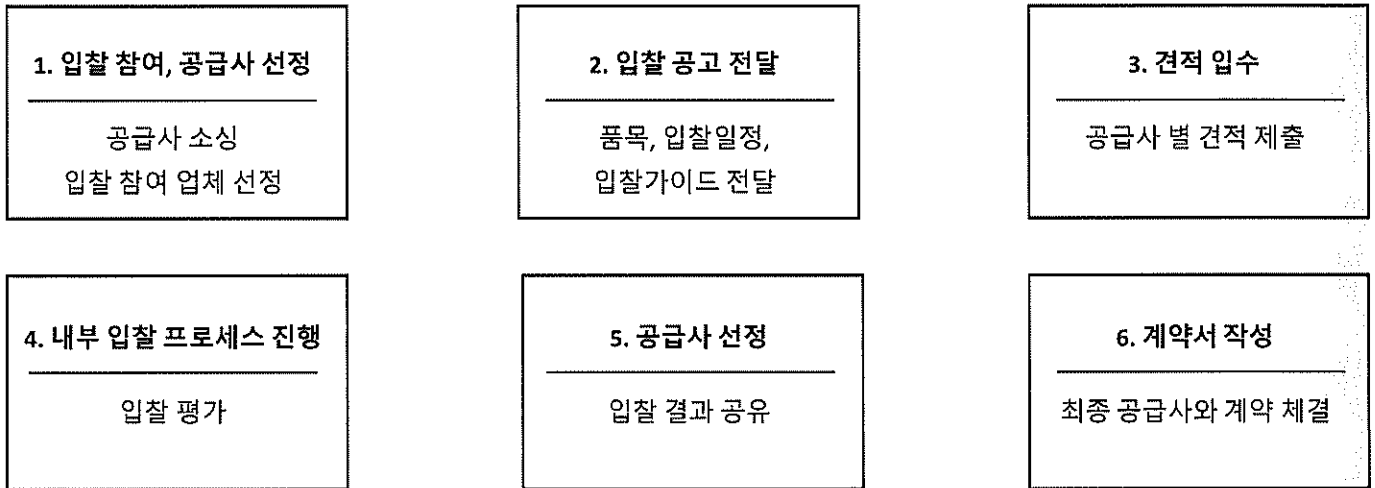
#### 제2조. 윤리적 구매

어린이 고용, 비자발적 노동 등 비윤리적 행위가 포함된 구매를 금지한다.

#### 제3조. 공정구매절차 준수

법률규범을 준수하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입찰 및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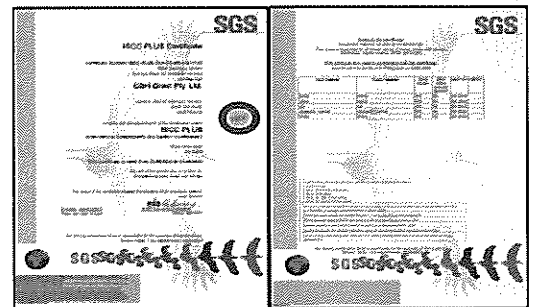
### 공급망 확보 프로세스



### 친환경 공급망 구축현황

#### 1) ISCC PLUS 원재료 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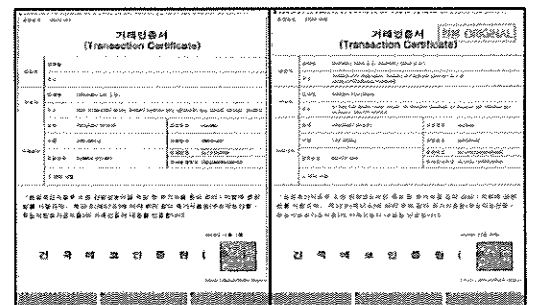
사조동아원은 당사 사업의 주요 원재료인 소맥 중 일부를 ISCC PLUS 인증을 받은 호주산 밀을 구매하며 친환경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후변화대응 및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을 위해 친환경 원재료 구매를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 2) 유기농 원재료 구매

사조동아원은 당사 사업의 주요 원재료인 소맥 중 일부를 유기농 생산자, 유기농취급자 인증이 된 공급업체를 통해 구매하여 친환경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공급망 구축을 위해 유기농 원재료 구매를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 안전보건경영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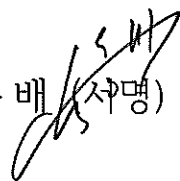
사조동아원 주식회사는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경영책임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2.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알도록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2022년 12월 01일

사조동아원 주식회사 대표이사 남동배 (서명)



■ 산업재해율 현황(재해자수(사고재해자+질병재해자)/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 X 100

구분	사업장명	2021년	2022년	2023년
제분	본사	0.0	0.0	0.0
	당진공장	0.0	0.0	0.0
	부산공장	2.30	1.16	0.0
곡물	논산공장	0.0	0.0	0.0
	광석공장	0.0	0.0	0.0
생물자원	당진공장	0.0	0.0	1.89
	함평공장	0.0	0.0	5.56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21년 1월 ~ 2023년 12월)

■ 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산재보험적용 근로자수) X 100

구분	사업장명	2021년	2022년	2023년
제분	본사	0.0	0.0	0.0
	당진공장	0.0	0.0	0.0
	부산공장	0.0	0.0	0.0
곡물	논산공장	0.0	0.0	0.0
	광석공장	0.0	0.0	0.0
생물자원	당진공장	0.0	0.0	0.0
	함평공장	0.0	0.0	0.0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21년 1월 ~ 2023년 12월)

■ 협력업체 산업재해율

구분	협력사	2021년	2022년	2023년
부산_제분	비케이로지스	0.0	0.0	0.0
부산_제분	동아로지스틱스	14.29	0.0	0.0
부산_제분	용진하이테크	0.0	0.0	4.6
당진_제분	포유푸드	0.0	0.05	0.0
당진_제분	더원로지스틱스	0.0	0.0	0.0
당진_제분	용진하이테크	0.0	0.0	11.1
함평_생자	연안개발	7.7	0.0	0.0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21년 1월 ~ 2023년 12월)

# 윤리경영실행 서약서

## 제1조(목적)

본 약관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사조동아원(주) (이하 "회사"라 한다)과 거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 사항을 명시하여 양당사자(이하 쌍방을 지칭할 때는 "양당사자"로 표기하고, 어느 일방만을 지칭할 때는 "당사자"로 표기한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범위)

본 약관은 양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양당사자 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 ① 양당사자의 임직원은 본 약관이 적용되는 모든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UN 부패방지협약,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을 포함한 모든 국내외 뇌물 및 부패방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상대방은 회사의 윤리경영의지를 이해하고, 뇌물거래방지규정준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상호간의 윤리규범 준수 의무)

- ① 회사의 임직원은 본 약관이 적용되는 상대방과의 모든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상대방에게 윤리 규범을 제공하여 이를 숙지하게 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받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상대방은 전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윤리규범을 숙지한 후, 회사의 전항의 확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양당사자는 서로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상호간의 윤리규범준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위반 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 ① 상대방은 거래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통상적인 수준의 기념품 및 선물을 제외한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뇌물거래방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6. 회사의 유·무형 자산의 손해를 초래하는 위법 행위 및 회사 임직원에게 위법을 강요, 조장하는 행위
  7. 거래에 있어, 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계약 성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자유클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거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9. 신규 거래 절차 진행 또는 기존 거래 도중에 특수이해관계자(귀사 재직 중인 임직원 및 임직원의 5촌 이내의 친인척, 퇴직 후 2년 미만의 임직원)가 있거나 새로이 발생하여 부당거래를 한 일체의 행위
-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통상적인 수준'이라 함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용인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 ③ 회사는 상대방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3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 ⑤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횡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⑥ 회사는 상대방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사와 상대방과의 당해 거래 또는 모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갱신거절 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사항 발생 시 관련 법규에의거한 고소, 고발, 진정 등 법적 절차 진행할 수 있다.
- ⑦ 회사는 제3항과 제7항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6조(경과조치)

본 약관은 이미 체결 또는 개시되어 이행 중에 있는 계약 또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본약관에 서명·날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는 상기 서약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사조동아원(주)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46-2번지 사조빌딩  
대표 이사 : 남동배 (인)  
상 호 : ○○○○○  
주 소 : ○○시 ○○구 ○○동 ○○빌딩  
대표 이사 : ○○○ (인)

# 거래약정서

(일반거래용)

을(를) "갑"이라 칭하고 을(를) "을"이라 칭하여, 갑이 생산하는 제품 을 을이 판매함에 있어서 하기 조항을 약정한다.

하 기

## 제 1 조 (적용범위)

- 갑이 생산하는 제품을 본 계약 기간중에는 을에게 성실하게 공급하며, 을은 갑의 제품을 판매한다.
- 을은 갑에 대하여 현재와 장래에 발생하는 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를 이 약정에 따라 이행한다.

## 제 2 조 (제품가격 및 대금 지급 방법)

-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제품가격은 갑의 원가계산에 의하여 결정되며, 원가구성요인의 변동에 따라 항시 조정될 수 있다.
- 을은 대금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매월 10일, 20일 또는 말일에 갑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제 3 조 (담 보)

- 을은 본 약정기간 중 갑에 대한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원리금 및 손해배상금과 기타 비용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한다.
- 담보의 제공은 부동산 담보를 원칙으로 하며 근저당 또는 양도담보 절차를 취한다.
- 제공되는 담보가 동산인 경우에는 매도 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한다.
- 을이 혹은 제삼자가 을을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는 을이 갑에게 부담하고 있는 과거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원리금, 손해 배상금 기타 비용 등)에 대하여 담보하고, 모든 담보는 동 채무 등에 대하여 공동담보를 제공한다.
- 제(1)내지 전항의 담보가 사변, 화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멸실 또는 멸소되거나 담보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갑의 요구에 따라 을은 즉시 대담보 또는 추가 담보를 제공한다.

## 제 4 조 (연대보증인)

- 연대보증인은 갑에 대하여 을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을과 연대하여 이행의 책임을 진다.
- 연대보증인은 갑이 필요에 따라 담보 또는 다른 보증을 변경하거나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와 갑과의 거래에 관하여 따로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은 본건 보증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 연대보증인 ( )은 본 계약에 따라 최고액( )원 및 그에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며 보증기간은 본 약정서 효력 발생일로부터 ( )년으로 한다.

## 제 5 조 (약정기간 및 지체손금)

- 이 약정의 존속기간은 이 약정 체결일로부터 갑과 을 사이의 채권, 채무가 소멸되는 때까지로 한다.
- 을이 채무액의 변제를 지체하였을 시는 갑은 을에게 지체손금으로 채무액의 연 16% 비율에 의 한 손해금을 합산하여 변제 받는다.
- 갑은 을이 이 약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최고없이 이 약정을 해지하고,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 6 조 (합의관할)

이 약정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할 것 을 합의한다.

## 제 7 조 (기 타)

이 약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약정 취지에 따라 일반 상관례에 따르되 갑, 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20 년 월 일

■ 갑

서울시서초구방배천로2길12(방배동)
사조동아원주식회사
대표이사 남동배

본인기재확인	
입회자 (담당자)	

■ 을

주 소	
-----	--

상 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성 명	

■ 연대보증인

주 소	
주 민 등 록 번 호	
성 명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사조동아원 주식회사 귀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귀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정보집중 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로부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회할 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대출, 카드, 보증 등 거래내용),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 신용등급 및 신용평점 정보, 타 기관의 신용정보 조회 기록, 기타 본인의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 조회목적: 1.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목적으로 활용.

2. 여신한도액 설정 여부 판단, 채권추심, 유가증권양수 등 기타.

■ 조회동의 효력기간: 귀하가 상기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상거래관계의 효력이 종료하는 시점까지 상기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성 명 : (인)

## 사조동아원(주) 협력사 행동규범 준수 서약서

당사는 '사조동아원(주) 협력사 행동규범'을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본 행동규범을 숙지하였으며,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이 사조동아원(주)과 거래함에 있어 중요한 조건임을 인식하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사조동아원(주)과 거래하는 협력사로서 본 행동규범의 의무위반이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과 만약 해당 문제가 해결되거나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사조동아원(주)이 당사에 서면 통지를 하여 시정 요구, 거래관계의 중단 또는 종료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2. 사조동아원(주) 또는 사조동아원(주)이 지정한 자가 당사의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 설문 또는 현장 방문을 요청 하고 필요에 따라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영업활동,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가 침해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 하고 사조동아원(주)의 요청에 협조하고 성실히 대응하겠습니다. 상기에 언급된 예외적인 경우는 사조동아원(주)로부터 사전에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사조동아원(주)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관련 시설, 자료, 인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겠습니다. 당사는 본 행동규범의 위반을 즉시 시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당사의 하청업체 또는 공급상의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을 시에도 이들에게 동일하게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3. 당사는 당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당사의 협력사에게도 본 규범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전달하여 준수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4. 당사는 본 행동규범이 사조동아원(주)에 의해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5. 당사는 모든 확인된 리스크와 이에 대해 취한 후속 조치에 대한 문서와 기록을 사조동아원(주)이 요청한 기간동안 보관하고, 본 행동 규범의 위반 사항을 인지하게 되는 즉시 사조동아원(주)에게 이를 통지하겠습니다.

본 서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사가 보관하고 1부는 귀사에 제출합니다.

서약자 :



# 사조동아원(주) 협력사 행동규범

## 서문

사조동아원(주)은 협력사와 사조동아원(주) 간 동반성장의 근간이 되는 윤리경영을 강화하고자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시합니다.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존중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즉, 사조동아원(주)의 협력사는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협력사의 이행 의무사항을 모두 명시한 것이 아니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행동규범은 정기적으로 검토, 보완, 개정될 수 있습니다.

## [인권경영]

### 1. 자발적 근로

협력사는 강제 노동, 착취 노동, 인신매매 및 감금 노동, 비자발적인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안되며 모든 근로는 자발적인 근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규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를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발행된 여권, 근로 허가증 등을 양보받아서 안됩니다. 근로조건을 근로자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문서화하여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의 이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용 절차에 발생한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 2. 아동 노동 금지

협력사는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아동은 만 15세 미만 또는 현지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 가능한 최저연령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연령 증명 문서를 철저히 검증하여 아동의 고용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합니다. 법정 고용 최저연령보다 높으나 만 18세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안전보건상 유해한 작업(공정), 초과근무, 연장/야간근로를 수행해서는 안됩니다.

### 3. 근로 시간 준수

협력사는 법규에 정해진 근로시간 및 근로 일수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내의 비상 사태 및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주당 총 근로시간은 현지 법 기준 또는 6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연장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매 7일마다 최소한 1일의 휴무를 허용해야 합니다.

### 4. 임금 및 복리후생

협력사는 법규에서 정한 법정최저임금 기준 이상의 급여와 초과근무시간 보상,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과 함께 법규를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초과 및 야간 근로시에는 시급 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초과/야간 근무수당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기준은 급여내역서나 유사한 서류로 적절한 시기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징계조치로서의 임금에 대한 삭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5.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폭력, 성폭력, 성희롱, 정적대해, 체벌, 정신적/육체적 강압, 괴롭힘, 폭언, 공개적 수치심,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하면 안됩니다. 이를 위한 합리적인 징계 규정과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위 규정과 절차를 근로자에 공지해야 합니다.

### 6. 차별 금지

협력사는 채용, 승진, 보상,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 고용 관행에 있어서 성별, 인종, 피부색, 연령, 나이, 성적지향, 성 정체성 및 표현, 출신민족/국가, 장애, 임신, 결혼, 종교, 정치 노조활동 또는 사회적 신분, 질병을 통한 근로자에 대한 불법적인 차별이 없어야 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현지 법률 또는 작업장 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구직자)에게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항목(임신여부 등)의 의료검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종교적 관습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7. 결사의 자유 보장

협력사는 현지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할 수 있는 권리, 단체협약과 평화적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러한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안전경영]

### 1. 산업안전 및 안전교육

협력사는 국가별 안전보건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획득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식별된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유해물질 대체 등 잠재 위험 요인을 파악 및 평가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 보호구를 지급하며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산업보건 및 안전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정보를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임신중이거나 수유중인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와 정책을 보유하고, 협력업체 휴식시간과 수유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 2. 비상사태

협력사는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발생시 보고, 대응, 후속조치 등의 내용이 구성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국가별 법률, 자체 수립된 계획 및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비상상황 발생시 탈출로, 유도등, 화재감지기, 경보기,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3. 산업재해와 질병예방

협력사는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 관리, 추적,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사건 사고에 대한 내용을 자유롭게 보고하고, 부상자 질병이 사례를 유형별 분류하여 기록하며,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고 근본원인을 분석 후 시정이나 예방조치를 수립하고, 근로자의 치료 후 사업장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지 법규에서 요구하는 주기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4. 작업환경 내 유해인자 노출관리

협력사는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임직원이 노출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공간의 안전성 위해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평가결과는 임직원에 알리며 평가에 따라 기계/기구/설비를 개선해야 합니다.

### 5. 육체적 과중 업무 관리

협력사는 단순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과중업무를 파악하고, 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을 개선(보조설비 도입, 작업대 높낮이 조정 등)하고, 순환근무/스트레칭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 6. 설비안전

협력사는 모든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법규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방호장치,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예방정비 및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7. 위생 및 시설 제공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깨끗한 화장실, 식수, 위생적인 식품 조리, 보관 및 식당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숙사 또한 위생적이고 안전해야 하며, 적절한 비상구와 냉/난방, 온수, 조명 및 환기장치, 시건 가능한 개인 사물함 또는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 [환경경영]

### 1. 환경 법규 준수

협력사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 유지하고 사업수행 국가의 환경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2.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사용 절감

협력사는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을 위해 생산, 유지 및 처리 시설의 처리과정 변경, 대체 재료 사용 및 보존, 원료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 폐수와 폐기물 등의 오염을 최소화 하거나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3.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협력사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세우고 단계적으로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배출량을 파악해야 합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4. 유해 화학물질 관리

협력사는 특정물질의 사용, 취급을 금지 또는 규제하는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출시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화학물질(지정 폐기물 포함)을 파악하여 기록하고 해당물질을 안전하게 저장, 운반, 사용, 재활용/재사용, 폐기해야 합니다. 취급 간 누출 시 토양, 우수 오염이 가능한 지역을 파악하고, 유출 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누출대응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 5. 폐기물 및 폐수관리

협력사는 법규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 후 배출해야 하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운반업체 포함)는 법적으로 적법하게 운반/처리, 폐기가 가능한지 평가(현장점검 포함) 후 선정합니다. 발생하는 모든 폐수는 현지 환경 인허가 및 관련 법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우수 배수로 및 지역 사회로의 폐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합니다.

### 6. 대기오염관리

협력사는 공정 상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에어로졸, 부식성 가스, 분진, 오존층 파괴물질, 연소 부산물의 종류, 특성, 발생량을 파악하고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합니다. 오존층 파괴물질은 몬트리올 의정서 및 해당 규정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리 되어야 하며 방지설비의 처리 효율은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 7. 제품 및 공정 내 유해물질 규제 준수

협력사는 국내외 환경규제에서 금지하고 있는 물질 및 인체 위해 우려 독성물질이 제품에 포함되거나 공정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재활용 및 처리 라벨 표시를 비롯한 특정 물질의 금지나 제한에 대한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윤리경영]

### 1. 투명경영 및 반부패

협력사는 각 국가별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준수하고 각 국가별 공정거래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적절하고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형태의 부패나 갈취, 횡령, 뇌물 수수, 상납, 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를 무관용 정책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연례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반부패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업체에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경쟁 회피 목적의 담합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2. 정보공개

협력사는 정보 공개 관련법규, 업계 모범 기준에 따라 노무/안전보건/환경 관리 실태, 경영 활동, 지배구조, 재무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를 해당 법규와 업계 관행에 따라 사실대로 공개해야 하며, 정보 조작 및 허위진술 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부 점검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허위정보 제공을 예방하고, 법적 요구사항 및 업계 관행에 따라 적시에 보고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급망 내의 관련 분야의 실태 및 관행에 대한 기록의 위조와 허위 진술도 없어야 합니다.

### 3. 지적 재산권 및 정보보호

협력사는 모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술/노하우의 이전시 해당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침해 받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사 및 거래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유출하지 않으며, 업무수행시 취득한 정보는 사전허가 및 승인 없이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사조동아원(주)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 4. 신원 보호와 보복금지

협력사는 임직원이 노무, 윤리, 환경, 안전보건 분야의 법률 및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 또는 인지하거나,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법적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 및 익명성이 보장되는 신고채널과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공지해야 하며,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위협, 보복, 조롱 등 내부고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 5. 국제 거래질서 존중

협력사는 사조동아원(주)에 납품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모든 국제무역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인권 침해 또는 환경 파괴의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생산된 원자재를 공급받아서 안되며,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부터 원료·제품·서비스를 공급받아서 안됩니다. 또한 국제제제대상과의 수출입, 판매, 투자, 송금 등 어떠한 거래도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직접 구매가 아닌 하위 공급망에 제제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 국제제제대상과 거래를 사후에 인지할 경우 즉시 사조동아원(주)에 통보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침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6. 품질관리

협력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규에서 정한 제품의 품질,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품을 생산·유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과정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과 우수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 생산을 위해 품질관리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 및 유지해야 합니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제품안전 및 품질관리에 대한 위해물질기준 규격 및 현지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원료 취급부터 제품 출고까지 품질 안전 관리활동에 만전을 기하며 식품안전인증제도, 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법 준수 등 품질 안전을 준수해야 합니다.

## [경영 시스템]

### 1. 경영진의 준수의지 공시

본 행동규범의 준수 책임자로서 협력사 경영진은 준수의를 문서로 표현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내부지침,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사업보고서,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외부에 공개할 것을 권장합니다.

### 2. 외부 요구사항 대응

협력사는 본 규범을 포함한 최신 법규와 고객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정기적 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심사결과 부적합은 근본원인을 분석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 3. 리스크 평가와 관리

협력사는 노무, 윤리, 환경, 안전보건 측면의 잠재 리스크를 파악하고, 발생가능성이 크고 영향이 큰 리스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이행현황을 경영진에 보고하여야 한다.

### 4. 목표 수립과 관리

협력사는 노무, 윤리, 환경, 안전보건 측면의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달성현황을 연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 5. 교육훈련과 의사소통

협력사는 본 규범과 준수를 위해 관리자/근로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협력사의 정책, 목표, 성과에 대하여 명확한 정보를 근로자, 하위 협력사, 사조동아원(주)과 공유해야 한다.

### 6. 정보관리

협력사는 노무, 윤리, 환경, 안전보건 분야 현황 및 리스크 관련 정보를 관련 법규와 사내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 문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7. 협력사의 책임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에게도 본 규범을 전달하고 준수를 요구하며, 준수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가 노무, 윤리, 환경, 안전보건 분야의 법률 및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거나, 관련 리스크 등을 인지한 경우, 개선을 권고하거나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